

서울중앙지방법원 2018. 7. 19 선고 2018가단10775 판결 [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등]

전 문

원고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

피고강남화성 주식회사

변론 종결2018. 6. 21.

판결 선고2018. 7. 19.

주 문

1. 피고는 A, B, C, D에게 충남 부여군 E 임야 95035m²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부여등기소 1993. 4. 27. 접수 제5511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같은 등기소 1993. 4. 27. 접수 제5512호로 마친 지상권설정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(원고의 공동피고 기아자동차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는 2018. 6. 26.자 화해권고결정의 확정으로 종국되었다)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: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
2. 자백간주 판결(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항, 제150조 제3항)

판사이영풍

별지